

「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」 신규조문대비표

2016. 2. 28. 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19. 2. 25. 개정 판 (시행 2019. 3. 1.)

바뀐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42/compare?from=819&to=115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7:05:3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학칙 제4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학칙 제59조에 의거 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생지도교수 분담) ①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-학생 멘토링(평생담임)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. ②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 단,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. 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 생활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2조(학생지도교수 분담) ①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교수-학생 멘토링(평생담임) 운영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지도교수를 배정하되 진로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배정한다. ② 학생지도교수는 한 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 단, 해당 학생의 전공과 소질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. ③ 각 학과에서는 매년 3월 초에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을 학생 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-02-25>
제3조(상담의 실시) ①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5-07-15> ②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 ③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-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(SU-JPF)에 기재하여야 한다. ④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.	제3조(상담의 실시) ① 학생들은 입학 시 학생처에서 배부받은 개인상담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5-07-15> ② 각 학과에서는 학기 초에 제출된 개인상담기록부를 학생지도교수 배정안에 따라 학생지도교수별로 집철하여 해당 지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 ③ 학생지도교수는 매년 3월 초에 배정된 학생들의 상담 지도계획을 진로상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한 학기 1회 이상 상담하고 이를 SU-WINGS에 연동된 학생상담시스템(SU-JPF)에 기재하여야 한다. ④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시스템에 기재된 상담결과를 확인한 후 교무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. <개정 2019-02-25>
제4조(사후지도)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하며, 필요시 학교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. 1. 학생생활상담 센터: 진로/심리(집단)상담, 종합인성성검사 등 2. 건강증진센터: 흡주·흡연예방교육, 건강예방생활, 정신건강 상담 등 3. 장애학생지원센터: 장애학생/학부모 상담 지원,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	제4조(사후지도)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<u>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</u> 하며,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-02-25> 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. <개정 2019-02-25> 1. 학생상담센터: 진로/심리(집단)상담, 종합인성성검사 등 2. 건강증진센터: 흡주·흡연예방교육, 건강예방생활, 정신건강 상담 등 3. 장애학생지원센터: 장애학생/학부모 상담 지원, 장애도우미

현 행	개 정 안
4. 양성평등센터: 성희롱/성폭력 상담, 성윤리상담실 5. <u>취창업</u> 지원센터: 취업진로 상담, 창업진로 상담, 경력관리 개발 6. <u>외국인</u> 학생 지원센터: 외국인 학생 학습/진로/생활 상담	프로그램 운영 4. 양성평등센터: 성희롱/성폭력 상담, 성윤리상담실 5. <u>스타트업</u> 지원센터: 취업진로 상담, 창업진로 상담, 경력관리 개발 6. <u>국제</u> 학생지원센터: 외국인 학생 학습/진로/생활 상담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생지도교수 분담제 운영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49조"를 "제59조"로 한다.

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 중 "학생생활상담센터"를 각각 "학생상담센터"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후지도) ① 학생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분담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해야하며, 필요시 제2항의 각 센터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담 학생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 되는 학생들은 대학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아래의 각 센터에 전문상담을 의뢰해야 한다.

1. 학생상담센터: 진로/심리(집단)상담, 종합인적성검사 등
2. 건강증진센터: 흡주·흡연예방교육, 건강예방생활, 정신건강 상담 등
3. 장애학생지원센터: 장애학생/학부모 상담 지원, 장애도우미 프로그램 운영
4. 양성평등센터: 성희롱/성폭력 상담, 성윤리상담실
5. 스타트업지원센터: 취업진로 상담, 창업진로 상담, 경력관리 개발
6. 국제학생지원센터: 외국인 학생 학습/진로/생활 상담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